

2022년 대학안전관리계획

2022. 7. 29



명지대학교

목 차

I.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1
1. 목표 및 기본방향	1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3
II.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7
1. 재난	7
① 자연재난	7
② 사회재난	14
2. 안전사고	16
① 대학 안전사고	16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20
③ 연구실사고	22
3. 감염병 확산	24
①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4
4. 범죄	31
① 일반범죄	31
② 성범죄	36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49
① 산업재해	49
② 중대재해	55
6. 기타	61
① 비상사태(전시, 침투·도발 등)	61

목 차

III.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63
IV.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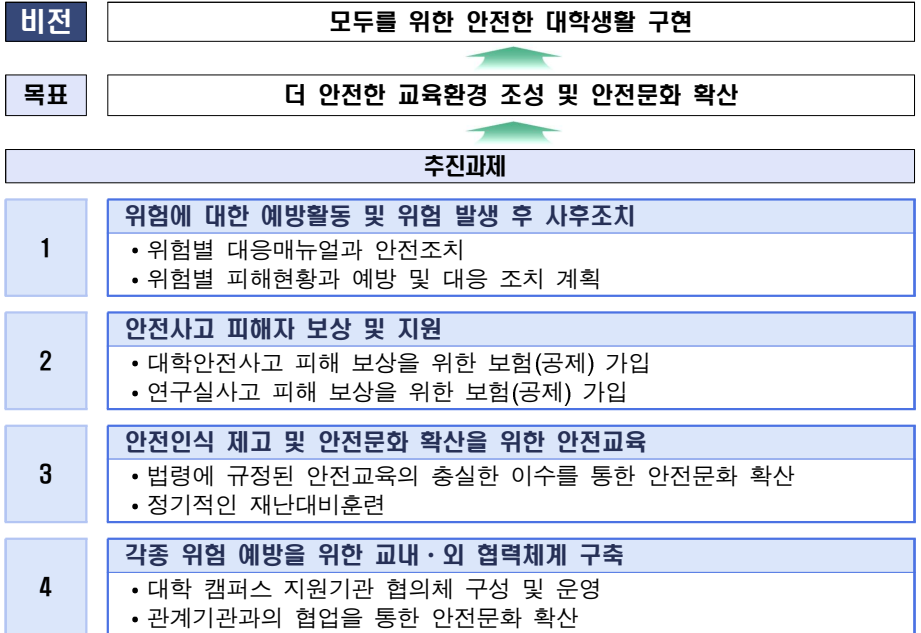
I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 목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설정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행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처리 절차마련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조속한 복구 등 수습능력 제고
-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 관련 예산 편성과 전담 조직 구성·운영

<위험요인별 관련 주요 법률>

구 분	주요 법률
1. 재난	▪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 안전사고	▪ 「고등교육법」, 「교육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3.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범죄	▪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5.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6. 비상사태	▪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방침

- 대학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을 최우선 의무 이행사항으로 규정
- 대학 소속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대학 사업장 종사자를 보호 대상으로 고려하여 이사장 또는 총장의 안전보건 경영 리더십 강조
- 재난사고, 안전사고, 산업재해는 총괄부서에서 중점관리
- 사고 발생 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위기관리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대학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 관련 총괄 업무는 대학별 법정 총괄 재난안전부서(또는 경영책임자 직속 대학 전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인원 확보 노력
 - 재난·안전 분야별 세부 구체적인 업무추진은 대학별 업무분장 부서에서 지정 주관
 - 재난·안전 총괄부서는 대학 주요 관리 업무의 대응 절차 및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
- 체험 위주의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강화로 유사시 신속 보고체계 이용 및 유관기관의 비상 연락망 활용

□ 수립 절차

- **(계획수립·시행)**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시행
- **(계획제시·제출)** 학교의 장은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공시 항목관리기관'에 제출*

* 대학안전관리계획은 대학정보공시 항목으로 '항목관리기관(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제출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학교 현황

□ 일반현황

학교명	명지대학교	설립 구분	사립
주 소	(자연캠퍼스)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64		
	(인문캠퍼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전 화	02-300-1405	FAX	-
		홈페이지	https://www.mju.ac.kr
총장	유병진	총괄안전관리 책임자(관)	유병진 (직책: 총장)

□ 교직원 및 학생 현황

학생 (명)	학부생	대학원	합계	비고
	19,426	2,839	22,265	(자연+인문)

교직원 (명)	교직원	전임교원	현업업무직원	학생보호인력	기타	합계
	402	513	114	-	-	1,029

□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도 (자연캠퍼스)



□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도 (인문캠퍼스)



② 조직체계 현황

- 대학 총괄 안전관리 조직체계 확립
 - 총괄 안전관리 전담 조직 설치 및 총괄 안전관리책임자(관)와 안전·보건 경영에 관한 안전관리자 지정으로 안전관리 조직체계 마련
- 대학안전 관련 환경 변화 대처 필요
 - 산업안전 체계 구축으로 교육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강화 필요
- 주요기능
 - 안전정책 기획 및 총괄·조정, 대학 구성원 참여 확대 안전점검 추진
 -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 범죄, 산업안전 등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 소관기관별 직제규정 중심으로 안전 관련 주요 임무·기능 기재
- 담당부서현황 및 비상연락망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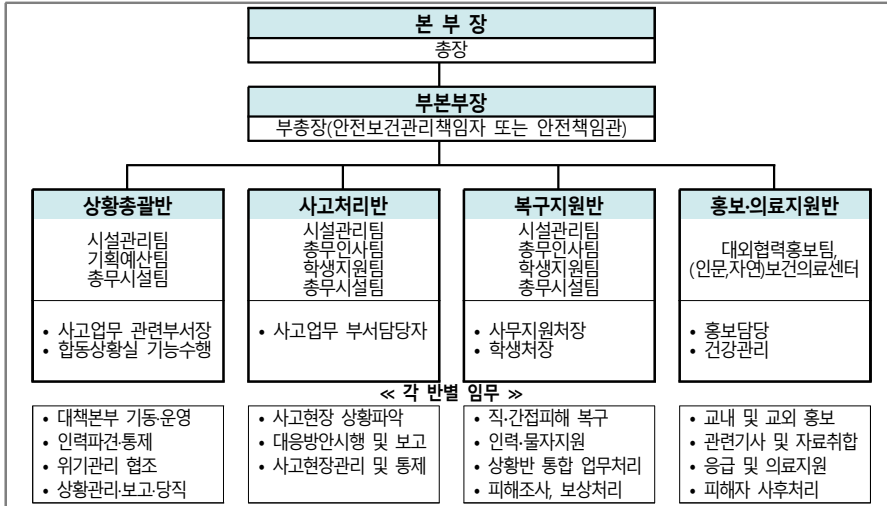
□ 담당부서 현황

구분	위험유형	주관부서		비 고
		자연	인문	
1. 재난	자연재난	시설관리팀	총무시설팀	-
	사회재난	시설관리팀	총무시설팀	-
2. 안전사고	대 학안전 사고	학생지원팀	학생지원팀	학생 대상
		총무인사팀	총무시설팀	직원 대상
		교원인사팀	교원인사팀	교원 대상
	연구실 사고	시설관리팀	산학협력단	-
3. 감염병	교육시설안전	시설관리팀	총무시설팀	-
	코로나 19	총무인사팀	총무시설팀	-
4. 범죄	성범죄	인권센터	인권센터	-
	일반범죄	총무인사팀	총무시설팀	-
5.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설관리팀	총무시설팀	-
	중대재해처벌법	시설관리팀	총무시설팀	-
6. 기타	비상사태	비상계획팀	비상계획팀	-

□ 비상 연락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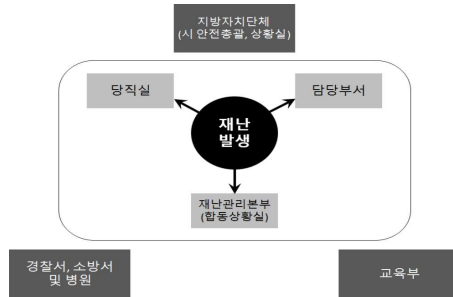
부서명	부서명	직 책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	연락처/이메일
총장실	총장실	총장	유병진	02-300-1405	010-7483-6009
	행정부총장실	부총장	박재현	031-330-6005	-
	교학부총장실	부총장	선정원	02-300-1405	-
자연	기획예산팀	팀장	안경훈	031-330-6045	ankh@mju.ac.kr
	교원인사팀	팀장	방은성	031-330-6018	nlabor@mju.ac.kr
	총무인사팀	팀장	홍성규	031-330-6010	hsg7134@mju.ac.kr
	학생지원팀	팀장	이석원	031-330-6033	leesw@mju.ac.kr
	시설관리팀	팀장	이유신	031-330-6902	010-2824-8832
인문	학생지원팀	팀장	윤강용	02-300-1520	best@mju.ac.kr
	총무시설팀	팀장	전용우	02-300-1550	dr1224@mju.ac.kr
기타	인권센터	센터장	이은경	02-300-0624	-

◆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비상연락망 구축사례

○ 대학 내·외부 재난 상황 전달 체계



○ 재난 심각단계 이전

담당부서	당직실	재난관리본부
각 재난별 담당부서	야간대응	사태·악화·시·운영

○ 재난 심각단계

담당부서	합동상황실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각 재난별 담당부서	주야대응	주야대응
자연 용인소방서 Tel.031-8021-0400	용인시 자연재난팀 Tel.031-324-3742	용인시 중대재해예방TF팀 Tel.031-324-3330
인문 서울서대문소방서 Tel.02-6981-5478	서울시 재난대응과 Tel.02-3706-1411	서울시 현장대응단 Tel.02-2133-8026

II

위험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1. 재난

■ ■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직 책	담당 부서	성 명	연락처	비고
자연	팀장	시설 관리팀	이유신	031-330-6902 lys1016@mju.ac.kr	
	팀원	시설 관리팀	김성태	031-330-6864, tjdxo0229@mju.ac.kr	
인문	팀장	총무 시설팀	전용우	02-300-1550, dr1224@mju.ac.kr	
	팀원	총무 시설팀	한경자	02-300-1555, hankj@mju.ac.kr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태풍)** 열대저기압 중심부의 최대풍속이 17m/s 이상으로 발달하여 태풍으로 명명된 것
 - 태풍이 발생되면 풍랑, 해일, 호우, 강풍으로 인하여 홍수, 산사태, 대규모 정전 등으로 인한 대학 시설물 및 학생 피해, 학생수업 결손 등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 **(호우)**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지칭
 - 국지성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대학 시설물 붕괴·매몰 위험 및 운동장, 강의실 침수 등의 피해 발생
- **(대설)** 일정 시간에 강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 및 시 외곽 도로의 통행이 불가하고 고립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에 차질을 빚으며 학생수업 결손 초래
- **(지진)** 지구내부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에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 지진 발생으로 인명 피해, 전력공급의 차질과 방송통신 시설에 피해 발생 및 라이프라인(life-line) 손상에 따른 수도물 및 가스공급 중단

□ 피해현황[근거: 교육시설공제 보상현황 자료]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발생건수	자연	4	2	3	1	1	2.20
	인문	1	1	2	1	1	1.20
재산피해 (백만원)	자연	44	28	9	12	42	27.00
	인문	45	2	11	5	4	13.40
합 계		89	30	20	17	46	20.20
사망(실종)	자연	-	-	-	-	-	0.00
	인문	-	-	-	-	-	0.00
부상	자연	-	-	-	-	-	0.00
	인문	-	-	-	-	-	0.00
합 계		0	0	0	0	0	0.00

□ 원인분석

- 시설관리팀, 총무팀 학생복지팀 점검조사 결과
 - 태풍의 내습에 따른 강풍 및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의 주요원인으로 연도별 피해 지속적 피해가 발생하는 추세로, 기상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재해취약시설 사전 예방 관리·조치 강화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예방·대비) 학생 및 교직원 재난안전교육을 통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
- (대응·조치) 재난 관련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 확립,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한 긴급대책 및 휴업 등 학사 운영조정 안내
- (수습·복구) 학사 운영 결손을 최소화하여 학생의 수업권 확보, 시설·심리·학업지원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복구계획 시행

《 [재난공통] 재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예방교육
 - 자연재난 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및 지침에 따른 재해취약시설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의식 고취
 - 학생, 교직원 대상으로 자연재난 사고 예방 관련 교육 수행
- 홍보활동
 - 자연재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퍼스 내 재난유형별 예방 활동 동아리 운영, 포스터 공모전 등 홍보 활동
- 재난대응훈련
 -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훈련 실시
 - 관계 부처 및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대학 구성원 대상의 정기적인 대피훈련 실시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재난사고 대비·대응 체계(상황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단계별 재난 상황 판단(관심·주의·경계·심각) 및 재난단계별 보고·전파
 -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담당 부서 및 실무자(정·부) 지정 관리
- 재난단계별 매뉴얼 운용·대응
 - **1단계** 관심, 주의단계

- 캠퍼스 내부 담당부서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따른 대응
- 비상연락망 점검, 당직실, 담당부서 순찰 등 수행

- **2단계** 경계단계

- 캠퍼스 내부 담당부서 비상근무 체제 돌입
-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의거하여 대응
- 취약 및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조치 / 부서별 협의(긴급 대피, 홍보 등)
- 교내 재난관리담당부서와 연락망 유지
-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 협조 요청
- 재해 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대처

- **3단계** 심각단계

-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의거하여 대응
- 재난관리본부 구성 및 대학합동상황실 운영
- 필요 시 재난관리본부 내 조직을 활용하여 업무지원
- 교육부 및 시 재난대책본부, 유관기관 협의

○ 재난상황보고·전파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성·운영

- 재난사고 보고체계 일원화 및 신속 보고·전파 체계 가동

- 교육부 안전대표 메일(moe119@moe.go.kr)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시, 24시간 일관성 있는 보고체계 유지
- 교육부 안전대표 메일로 보고 후 유선연락
- 교육부 상황보고 및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에도 재난상황 통보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 - 재난상황 보고

- 중대 재난발생 시 교직원, 학생, 방문객 등에게 사고 상황 및 대피로 등을 전파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구축된 재난안전관리 주관·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 활용 및 기관별 보유 자원(캠퍼스 시설 등) 공유 및 관련 내용 제공

④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피해조사

- 피해상황 조사 및 조사표 작성
- 재난피해 조사서 대장 작성
- 피해복구계획(안)과 인적·물적 피해 및 복구내역 조사
- ※ 피해조사결과를 교육부에 제출 (피해신고)

○ 피해 복구 우선순위 설정

- 피해 조사표 및 조사서 대장을 통한 피해 복구 우선순위 설정
- 피해복구계획(안)에 포함시켜 복구계획 수행에 반영

○ 사상자 대책

- 부상자 치료대책

- 의료반의 편성·운영
- 보건소, 보건지소 등 비상대기조 편성·운영
- 경상자는 원거리의 병·의원으로 후송
- 중상자는 최대한 가까운 거리의 종합 병원급으로 후송
- 보상의무자의 치료비 부담능력 및 보험조치 가능여부 확인 조치

- 사망자 대책

- 사망진단을 위한 병원 후송
- 사망자 신원 파악 후 유가족에게 즉각 연락
- 진단 후 보상 내용 결정(장례비, 유족배상 등)
- 보상금 지급·정산

- 구호활동

- 교통이 편리한 곳에 구호센터 설치·운영
- 상황에 따라 군부대 또는 시·군 의료구호반 파견 요청
- 의료활동 외에 상담 등 대피소 순회진료 등 구호활동 실시
- 피해지역 보건소장이 신속한 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난 보건 대책 현지 본부를 설치, 체계적인 구호활동 추진

○ 현장복구

- 재난복구는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역주민 및 민·관·군의 협조로 복구
- 대학 구성원 및 외부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 재발이 우려되거나 개량 계획이 있는 구조물은 예산 허용범위 내 개량복구**
- * (원상복구) 재난발생으로 기존 시설이 파손되어 기존 시설과 유사하게 복구
- ** (개량복구) 재난발생으로 기존 시설 파손 시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의 기능을 크게 개선하여 복구

○ 재난 모니터링 및 평가

- 대학 내 발생한 실험·실습실 사고를 통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제거 및 예방활동에 활용
- 중대 안전 사고의 전 과정에 대한 실행 측면과 조직 복원성 수준 측면 모두에서 개선사항 파악
- 도출된 개선사항은 '대학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보완·추진

◎ 모니터링 주요 결정사항

- 모니터링 대상 및 측정방법
- 재난(사고)에 대한 모니터링, 피해현황 측정, 원인 분석 및 평가방안 모색
-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기 결정
- 사전 재난(사고)요인을 사고 발생 전에 식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 상시 활동에 대한 문서화 작업
-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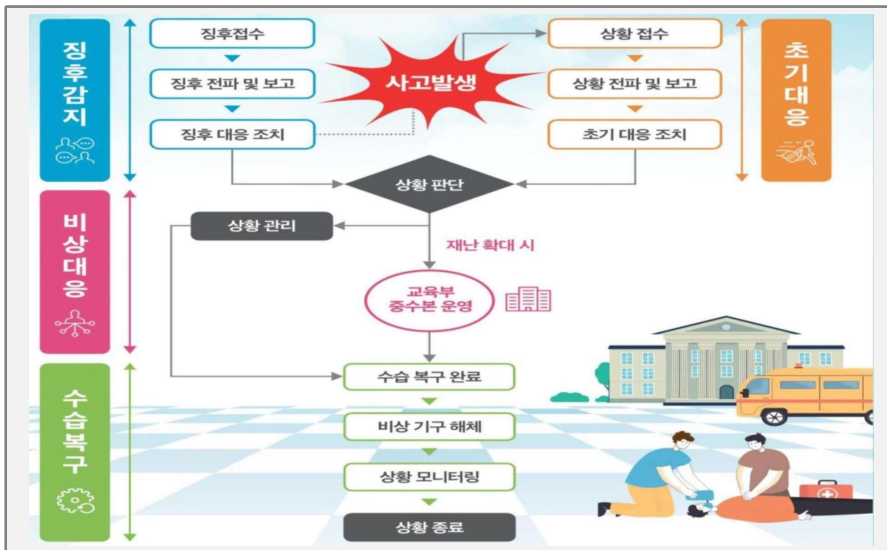
◎ 모니터링 주요 착안사항

- 각 대학의 지리적·환경적 요인 고려 및 최근 재난(사고)현황 사전 중점 분석
- 각 대학의 재난(사고)관리 정책의 적절성·시의성 및 준수 여부
- 재난(사고) 발생 후, 재난(사고)안전관리체계의 적절성 여부 등

◎ 모니터링 점검 활동을 통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모든 재난(사고)발생 매뉴얼에 반영

◎ 재발방지를 위해 부적합사항의 원인 검토·제거, 유사 부적합사항 규명

재난대응·복구 체계·절차



재난안전관리 단계 구분

- ❖ **(예방)** 재난·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재난·사고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 「재난안전법」 제4장 재난의 예방(제25조의2~제33조의3) 관련
- ❖ **(대비)** 재난·사고 발생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 준비, 교육, 훈련함으로써 재난·사고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재난·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
※ 「재난안전법」 제5장 재난의 대비(제34조~제35조) 관련
- ❖ **(대응)** 재난·사고 발생 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2차 위기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 「재난안전법」 제6장 재난의 대응(제36조~제57조) 관련
- ❖ **(복구)** 재난·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재난·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
※ 「재난안전법」 제7장 재난의 복구(제58조~제66조의3) 관련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근거: 연간 계정과목 산정 예산)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0	2021	2022	합계	
건물 및 시설물 유지보수	자연	261	596	1,147	2,004	
	인문	473	892	590	1,955	
계		734	1,488	1,737	3,959	

② 사회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직 책	담당 부서	성 명	연락처	비고
자연	팀장	시설관리팀	이유신	031-330-6902 lys1016@mju.ac.kr	
	팀원	시설관리팀	김성태	031-330-6864, tjdxo0229@mju.ac.kr	
인문	팀장	총무시설팀	전용우	02-300-1550, dr1224@mju.ac.kr	
	팀원	총무시설팀	한경자	02-300-1555, hank@mju.ac.kr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화재·폭발)**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
 - 방화, 실화, 테러 등에 의한 (대형)화재 및 자연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 폭발, 관리부실 등 부주의에 의한 (대형)화재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발생
- **(건물붕괴)** 학생, 교직원이 이용하는 시설물(체육관, 강의동, 기숙사 등) 등의 붕괴나 파괴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 구조적 결함, 부실시공, 노후화, 관리부실 등에 의한 건축물 붕괴 발생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적사고 초래
- **(미세먼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먼지) 중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 사업장, 발전소, 자동차 등에 의한 초미세먼지 생성과 대기 정체 및 외기 유입에 따른 고농도 초미세먼지 상황 발생으로 학생건강 위협 및 수업결손 초래

□ 피해현황(없음)

□ 원인분석

- 시설관리팀, 총무인사팀 점검조사 결과
 -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화재의 횟수 및 피해의 정도가 점차 증대되는 추세로 화기, 전열기구 사용·취급 시 안전교육과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강화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화재·폭발)** 불법·위험 전열기구 이용실태 점검, 소화기·소화전 등 소방기구·시설 설치·작동 상태 점검·관리, 화재경보 비상벨, 대피로 등 피난시설 이용·행동요령 숙지
- **(건물붕괴)** 일상·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발생에 대비한 보고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합동조사 체계 확립
- **(미세먼지)** 공기정화장치, 공조장치 등 미세먼지 저감 장치·시설의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및 위기경보 발령 시 학사운영 대책방안 마련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근거: 연간 계정과목 산정 예산)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0	2021	2022	합계	
자연	소방시설 유지관리비	54	67	66	187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	17	46	121	184	
	연구실 안전관리비	4	70	106	180	
	화재,재난 보험	46	48	51	145	
계		121	231	344	696	
인문	소방시설 유지관리비	29	22	28	79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	5	61	2	68	
	연구실 안전관리비	0	0	0	0	
	화재,재난 보험	20	1	25	46	
계		54	84	55	193	

2. 안전사고

① 대학 안전사고

□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공통	총무인사팀	팀장	홍성규	031-330-6045, hsg7134@mju.ac.kr	주관부서 (교직원)
공통	총무인사팀	팀원	조웅만	031-330-6046, misman@mju.ac.kr	
자연	학생지원팀	팀장	이석원	031-330-6033, leesw@mju.ac.kr	주관부서 (학생)
자연	자연학생지원팀	팀원	신동배	031-330-6719, db1108@mju.ac.kr	
인문	학생지원팀	팀장	윤강용	02-300-1520, best@mju.ac.kr	
인문	인문학생지원팀	팀원	배성훈	02-300-1431, hoonbae@mju.ac.kr	
공통	현장실습지원센터	센터장	홍상진	031-324-1121, samhong@mju.ac.kr	주관부서 (현장실습)
공통	현장실습지원센터	팀원	박지숙	031-324-1124, 20090196@mju.ac.kr	
자연	시설관리팀	팀장	이유신	031-330-6045, ankh@mju.ac.kr	협조부서
인문	총무시설팀	팀장	전용우	031-330-6046, misman@mju.ac.kr	
자연	보건의료센터	팀장	오선희	031-330-6045, ankh@mju.ac.kr	
인문	보건의료센터	팀장	유길자	031-330-6046, misman@mju.ac.kr	

□ 위험요인

○ (학교안전사고)

- 수업, 실습, 집단연수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교육활동 중 낙상사고, 비레·전도, 충돌·협착, 화상, 교통사고 등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신체 장애, 정신적 피해 발생 및 학습 결손 초래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활동) 학교안전사고 유사사례, 통계 등의 검토·분석을 통한 사고유발 요인 사전예방·대응관리와 안전사고 유형별 신속한 보고체계 및 적절한 보상·회복 지원 기반 조성
- (교외활동) 대학본부, 단과대학 등이 주관하여 교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 시 교통·숙박 시설 이행, 행사관련 각종 보험가입 등 학생안전에 필요한 각종 사항 점검·교육
- 행사 안전
 - 행사 안전기준을 적용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학생 집단활동 안전
 - 참가 학생 집단활동의 형태, 참가자, 규모, 지역, 활동(프로그램)에 따른 위험 정도를 고려한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 교내 주행 최고속도(15km/h) 제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반영]
- 단속요원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헬멧 착용 단속 및 개도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수칙 홍보 강화
- 해외 학생 집단연수를 기획하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또는 대표는 잠재적 안전 위험요인의 탐색·평가·관리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집단연수 4주 전까지 학생처에 제출
- * (포함사항) 방문지역, 수행 활동, 인솔자와 참가자 등

○ 현장실습 안전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재해예방 관리

▪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성희롱 교육 등 실시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요청(실습기관)		
❖ (상해보험) 대학은 현장실습 참여 학생 보호를 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의무적으로 가입 * 상해+후유장제+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배상책임+장래비+상조지원 등 보상 ❖ (산재보험)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에 한해 근로자로 의제하여 보험 의무 가입*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노동부고시) 개정('18.9.11)		
< 참여학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부고시) >		
구분	고등학교	대학교
범위	▶ 직업계고 한정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현장실습 한정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 4년제 및 전문대학 • 「고등교육법」상 실습학기제 등 포괄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등
대상	▶ 약 6만명	▶ 약 15만명
▪ 실습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여 휴게시간, 휴일 보장에 관한 사항 협의 ▪ 기계작동 및 실험기반 실습 등의 경우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의 지도·참관 하 실시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근로문제 예방 및 권익보호 강화

▪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문제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 체결 확인 ※ 실무직무 범위 내 노동관계법령 준수, 운영계획서 제출 시 실습기관과 협의·체결 ▪ 학생의 현장실습 상황 모니터링 및 확인·관리	
⇒ 학생이 부적정한 실습사항*을 알려온 경우 실습기관에 시정요청, 중단 및 복교조치	
* 실습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부여·지시·강요, 실습시간 기준 위반, 실습지원비 미지급 혹은 기준이하 지급, 산업 안전·재해보상·위생·성희롱 등의 문제, 현장실습 운영조건 변경·조정 발생 등	

○ 생활 안전

- 학생, 교직원, 방문객 등 등 교내 시설* 이용자의 미끄러짐·헛디딤·걸림·부딪침 등에 의한 손상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에 대한 상시적 위험요인 탐색 및 유지관리 실시
- * 강의실, 강당/체육관, 도서관(실), 미술/음악/무용실, 주방/식당, 사무실/작업실/회의실, 공용공간(현관/복도/계단/화장실), 체육장, 옥외 공간(조경/수경시설), 옥외 조형물 등

- 교내 체육시설, 운동기구 등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유지관리
- 교육시설 내 자동제동기, 구급상자 등 응급처치 도구 비치 및 안내

○ 외국인 유학생 안전사고

-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의 안전한 대학생활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학생안전을 위한 대학의 안전관리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 지원
- 비상시 대응절차 및 대응행동에 관한 정보 제공 지원
- 비상연락망 편성·관리 및 안내·배포
- 대학생활 관련 안전교육·훈련 제공 지원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관계기관 연락·신고

- 사고, 위급상황의 안전성 확인 및 안전성 확보
- 위험원으로 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분리·이격 조치 및 상태 유지
-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에 따른 응급처치 시행 또는 치료 제공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의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복구 실행 및 지원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0	2021	2022	합계	
외국인단체상해보험	164	100	62	326	
대학종합보험	39	41	54	134	
계	203	141	116	460	

2 교육시설 안전사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

※ (관련 기준)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직 책	담당 부서	성 명	연락처	비고
자연	팀장	시설관리팀	이유신	031-330-6902 lys1016@mju.ac.kr	
	팀원	시설관리팀	김성태	031-330-6864, tjdxo0229@mju.ac.kr	
인문	팀장	총무시설팀	전용우	02-300-1550, dr1224@mju.ac.kr	
	팀원	총무시설팀	한경자	02-300-1555, hank@mju.ac.kr	

□ 위험요인

- **(교내시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학교시설의 건설, 운영, 해체 등 건축물 생애주기 전(全)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물파손 및 인명피해
 - 건물 구조·성능, 교육활동 공간·환경, 건물 마감재료 및 기계·전기 설비 등 교육시설 주요 구성요소의 파손 및 기능저하에 따른 이용제한 및 학습지원 차질 초래
- **(주변시설)** 학교경계로부터 50미터 범위 내의 시설물(건물, 설비, 조경, 환경시설 등)의 설치·유지·보수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학교시설 및 학교구성원 피해
 - 학교 인접 공사장의 가설공사, 굴착공사, 작업차량·장비 이동·운용 등으로 학교시설 파손·이상 징후 발생과 학교구성원 통학안전 위협 및 옥외 학습활동 제한

□ 피해현황(없음)

□ 원인분석

○ 시설관리팀 자체점검 결과

- 「교육시설법」 및 관련 기준·지침의 제정에 따른 신규 정책 및 제도의 도입·시행으로 교육시설 안전사고는 감소추세이나, 최근 중대한 공사장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교육시설 조성부터 유지관리까지 안전점검·관리 관리강화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시설)** 교육시설의 계획·설계단계부터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적기에 취득하고, 안전·유지관리점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정기·중점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안전성능 유지관리
- **(주변시설)** 학교인접시설 공사 착공 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 위협 시 인·허가권자에게 안전확보 및 시정요청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근거: 연간 계정과목 산정 예산)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0	2021	2022	합계	
자연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	17	46	121	184	
인문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	9	62	2	73	
계		26	108	123	257	

③ 연구실사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5조~제7조, 제9조, 제12조~제14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등

※ (관련 기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직 책	담당 부서	성 명	연락처	비고
자연	팀장	시설관리팀	이유신	031-330-6902 lys1016@mju.ac.kr	
	팀원	시설관리팀	김준경	031-330-6904, kimjk4224@mju.ac.kr	
	팀원	시설관리팀	정용찬	031-330-6900, ycjeong0003@mju.ac.kr	
	팀원	시설관리팀	김성태	031-330-6864, tjdxo0229@mju.ac.kr	

□ 위험요인

- **(화학)**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미흡, 시약용기 라벨 미부착, 시약선반 안전바 미설치, 화학물질의 성상별 미분류, 시약용기 밀폐 미흡, 시약장 시건 상태 및 관리 미흡, 폐액용기 밀폐, 관리 미흡 및 성상별 라벨 미부착 등
- **(소방)** 인화성 물질 다량 보관, 소화기 미비치 및 관리미흡, 소화전 및 출입구 앞 장애물 적재, 피난대피로 확보 미흡, 비상구 유도등 및 유도표지 미설치 등
- **(가스)** 가스용기 충전기한 경과, 가스용기 고정 불량, 가스용기 밸브 보호캡 미설치, 가스용기 부식 및 변형, 가스 감지기 등 안정장치 설치 미흡
- **(전기)** 바닥전선 관리 미흡, 연구실 내 전열기 비치, 전기충전부 노출,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비접지형 콘센트 사용, 분전반 주변 물건 적재, 분전반 내 회로명 및 절연덮개 미부착
- **(생물)** 고압멸균기 사용대장 미비치, 의료폐기물 덮개 미설치로 인한 에어로졸 관리 미흡,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출입 통제 미흡 등
- **(기계)** 위험기계·기구 안전수칙 게시 미흡,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안전덮개 미설치, 법정 안전검사 미 실시, 동력차단장치 등 비상조치 장치 미흡 등
- **(위생)**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구급용구 관리 미흡, 개인보호구 미비치 및 관리 미흡, 인화물질보관장의 필터 미교체, 흡후드 관리 미흡 등

□ 피해현황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발생건수	0	0	0	0	1	0.2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1	0.2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원인분석

- **(부주의)** 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는 수은혈압계 정리중 부주의로 인한 파손
- **(안전의식 부족)** 수은의 특성 및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처리방법이 부적합하여 연구실 전체로 수은 오염이 확산되었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개인보호구 착용)** 연구활동은 물론 연구활동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도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도록 하여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 함
- **(안전교육 강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험)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 함
- **(사고보고 준수)** 사고발생 즉시 안전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고가 수습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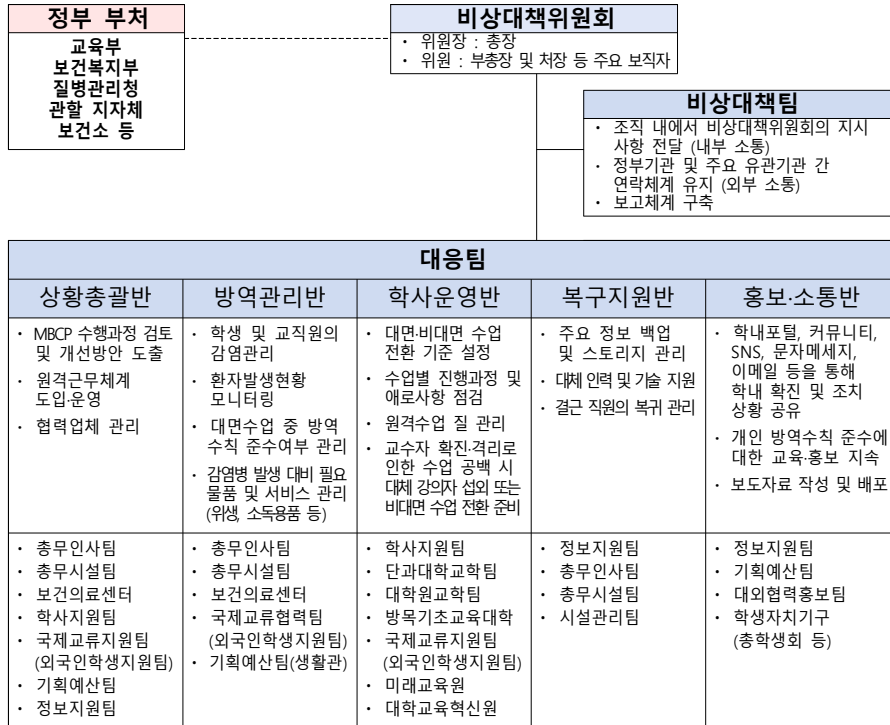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0	2021	2022	합계	
실험실 설비 설치·유지보수	84	144	170	398	
연구실 안전점검	10	10	10	30	
상해보험 가입	15	21	22	58	
건강검진	8	9	10	27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15	16	16	47	
개인보호구 구입	0	1	5	6	
계	132	154	180	566	

3. 감염병 확산

①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감염병 발생 대응 체계 및 역할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자연	총무인사팀	팀장	홍성규	031-330-6045, hsg7134@mju.ac.kr	주관부서
자연	총무인사팀	팀원	조용만	031-330-6046, misman@mju.ac.kr	
인문	총무시설팀	팀장	전용우	02-300-1550, dr1224@mju.ac.kr	
인문	총무시설팀	팀원	한경자	02-300-1555, hankj@mju.ac.kr	
자연	보건의료센터	팀원	오선희	031-330-6044, sunhee@mju.ac.kr	협조부서
인문	보건의료센터	팀원	유길자	02-300-1760, rew@mju.ac.kr	

□ 비상연락망

업무명	구분	캠퍼스	담당	연락처
확진자 발생보고	학부생 대학원생 미래교육원생 학생회(동아리) 교직원	자연	자연과학대학 교학팀장	031-330-6149
			공과대학 교학팀장	031-330-6349
			예술체육대학 교학팀장	031-330-6254
			건축대학 교학팀장	031-330-6982
			국제학부 교학팀	031-324-1056
			ICT융합대학	031-330-1041
			방목기초교육대학 교학팀장(자연)	031-330-6639
			대학원 교학팀장(자연)	031-330-6116
			미래교육원 교학팀(자연)	031-330-1502
			학생복지봉사팀장(자연)	031-330-6033
		인문	인문대학 교학팀장	02-300-1502
			사회과학대학 교학팀장	02-300-0657
			경영대학 교학팀장	02-300-0732
			법과대학 교학팀장	02-300-0802
			ICT융합대학	02-300-0642
			미래융합대학 교학팀장	02-300-1561
			방목기초교육대학 교학팀장(인문)	02-300-0852
			국제교류지원 팀장	02-300-1510
			대학원 교학팀장(인문)	02-300-1624
			미래교육원 교학팀(인문)	02-300-1803
			학생복지봉사팀장(인문)	02-300-1520
			인문	각 해당부서 팀장
		자연		
역학조사 취합	자연	보건의료센터	031-330-6044	
	인문	보건의료센터	02-300-1760	
총괄	자연	총무인사팀	031-330-6046	
	인문	총무시설팀	02-300-1555	

□ 위험요인

○ (코로나-19)

- 2019년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비말, 호흡기, 눈·코·입 점막 침투로 전염되는 호흡기 감염질환
- 코로나-19 확진자 증대,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감염병 상황 장기화로 인한 원격 수업 및 비대면 교육으로 학습·정서적 결손발생 및 지역간·계층간 학습격차 심화
- 질병관리청, 서대문구청, 처인구보건소 등 지자체 조사 결과 교내 학생, 교직원외 코로나19 감염은 증대추세이며, 감염 요인은 해외입국과 밀집시설 이용자들에게 방역수칙 준수 및 각별한 주의 홍보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질병관리청 감염병 교육 및 안내)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에 따른 교육 및 안내자료를 통해 대학 방역수칙 및 개인방역수칙을 수립하고 전파함. 또한, 감염원인은 해외입국과 밀집시설 이용으로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행동 수칙 교육·관리강화
- (비대면 교육)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동안 대학의 각종 활동(수업·행사·자치활동·운동부 훈련 등)은 가급적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거나 연기를 원칙으로 학사 운영
- (대면 교육)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환경 위생관리 및 거리두기 등으로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하고, 유증상자 조기 발견·조치 등 대학 내 코로나-19 감염 전파·확산을 방지

《 감염병 확산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❶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감염병을 예방 위한 안내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코로나19 최신 정보 및 국가·지역 발생 정보 등을 확인하여 학생·교직원 등에 안내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적극 안내 및 관리 철저
-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학생 및 교직원이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홍보 실시

- 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 코로나19 행동수칙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을 대학 내 게시판 등 주요장소에 부착
- 기저질환(만성질환, 당뇨 등)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교육·안내

< [안내사항] 누구나 해야 할 일,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

❖ 누구나 해야 할 일

■ 다음의 경우 반드시 비누와 물 또는 손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 ① 운동이나 쉬는 시간 후, ② 식사하기 전, ③ 등교 하자마자,
- ④ 화장실 이용 후, ⑤ 집에 도착하자마자, ⑥ 마스크 착용 전·후

■ 만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면

- ①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② 사용한 휴지는 바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후,
- ③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 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때 등교하는 것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는 것
- ③ 컵, 물병, 접시, 필기도구, 수건 등 공유하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 것

- 노래방, PC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이용) 및 소모임 금지 또는 자제 등에 대한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 철저
- 학생, 교직원 등이 등교(출근) 전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대학 (지도교수, 복무담당자 등)에 미리 알리도록 안내

❷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대학 구성원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담은 대응계획(학생 심리지원 포함)을 수립·시행 하여 학교 내 직원관리, 환경관리, 상황발생 즉시 대응 등 업무 수행
- * 학교의 코로나19 대응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세분화하고 역할을 정확히 숙지
- 대응계획에 따라 코로나19 총괄담당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코로나19 비상 관리조직을 구성하여 감염예방 활동 수행
- ※ 임신부,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천식, 만성폐질환자) 등은 담당자에서 제외
- 비상관리조직, 대학본부, 단과대학, 대학원, 대학보건실 등이 코로나19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 및 보고체계 구축
- 담당자는 대학 내 유증상자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교육부·유관기관(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 등) 연락처를 파악하여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 즉시 대응
- 유증상자 등에 대한 등교(출근) 중지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수검하며, 특히, 가정에서 임상증상 발견시 출근 및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수검

- 학생 및 교직원이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고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 준수
- * 확진환자의 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 등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 ※ 해외입국자이지만 보건당국의 '격리면제 대상자' 동거인은 등교중지 대상 아님
 - ※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학생(교직원)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 격리 시, 등교(출근) 가능
-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 등교(출근) 중지 학생 및 교직원의 출결 및 근태 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 학생 : 출석인정 / 교직원 : 재택근무 또는 병가
- ※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확진 문자,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행동수칙 >

1. 외출, 등교, 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서 쉽니다.
2. 의료기관 진료가 있으면 사전에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다고 알려 주십시오.
3.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지 관찰하여 주십시오.
4.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 * 응급상황으로 119 구급차를 이용 시에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다고 알려 주십시오.
5. 의료기관 방문 시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6.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으세요.
7.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8.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거리두기(2m)를 하세요.
9.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따로 사용하세요.
10.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매일 청소, 소독하세요.
 - ※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9-5-1판(21.4.12.)

○ 확진확자 발생 시 대응·조치

재학생(교직원) 확진자	단과대학 교학팀 (소속부서) 신고	소속학과(부서) 역학조사	총무부서
⇄	⇄	⇄	⇄
·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확진 결과 통보 (확진 판정)	· 확진자는 비상연락망 을 이용하여 본인 단과대학 교학팀 또는 소속부서에 신고 · 교강사에게 확진 사실 보고 및 공결처리요청 · 7일간 자가격리 및 등교(출근)중지	· 단과대학(학과) 또는 소속 부서에서는 총무부서에 유선보고하여 주시고, Myiweb에 COVID-19 확진자발생보고 프로그램 에 확진자 정보 입력 · 캠퍼스 별 총무부서 에 역학조사(이동통신) 내용 통보	· 비상대책위원회 보고 · 총무부서 확진자 이동통신 소독 · 일시적 시설이용 제한 (인원, 이동통신 등) · SMS 문자발송 · 확진자 현황 교육부 보고

-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확진환자가 발생한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제한 조치하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

-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등 조치한 경우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해당 기간 동안 집에 머물며 외출 자제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매일 확인 하여 의심증상 확인 시 선별진료 방문진료·검사

⑥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방역,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 대학 내 시설물, 통학버스, 기숙사 등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강화

- 구성원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손잡이, 키오스크, 각종 버튼, 수도꼭지 등)은 매일,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음수대 등은 수시 소독 실시
 - ※ 청소·소독은 1일 1회 이상, 환기는 1일 3회 이상 권고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주기적으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철저
 - ※ 에어컨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터도 자주 청소·교환 실시
- 대학 내 시설 및 화장실 등에 손 세정제, 비누 등을 충분히 배치
 - ※ 엘리베이터 내부, 문 손잡이, 키오스크 근처 등에 손 세정제, 일회용 장갑 등 비치
- 곳곳에 휴지와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기침이나 재채기 시 사용한 휴지를 깨끗하게 버릴 수 있도록 조치
- 학생, 교직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용역업체 및 입주업체 직원, 방문객 등에 대한 발열,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 철저
- 외부인(방문객)의 건물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확인 후 허가(출입 등록대장 작성·관리)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자 대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 △(실내) 이동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1층에 마련 (실외) 외기에 영향받지 않도록 천막 등 활용
- 보건용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물품은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비축기준을 참고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 ※ 체온계, 보건용(KF94, N95) 마스크, 의료용 장갑, 손소독제, 살균티슈 등

- 보건당국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 시설 이용제한 기간은 소독 및 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하여 시설이용 중단을 최소화
- 시설 이용제한 등의 범위

발생규모	이동 경로	시설 이용제한 범위(예시)
1명 발생 (방문포함)	이동 경로 명확	해당 강의실 또는 사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 이용제한
	이동 경로 불명확	확진환자의 이용 예상 구역(강의실, 사무실, 화장실, 복도, 식당, 승강기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중심으로 이용제한
복수 발생 (방문포함)	이동 경로 명확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층 전부 이용제한 ※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방역
	이동 경로 불명확	다수의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검토
		학교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 시설 이용제한 등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및 현장 방역 여건에 따라 결정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0	2021	2022	합계	
대학혁신사업	115	115	50	280	

4. 범죄

① 일반범죄

□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공통	교원인사팀	팀장	방은성	031-330-6018, nlabor@mju.ac.kr	주관부서 (교원)
공통	교원인사팀	팀원	조경화	031-330-6020, chokh@mju.ac.kr	
공통	총무인사팀	팀장	홍성규	031-330-6045, hsg7134@mju.ac.kr	주관부서 (직원)
공통	총무인사팀	팀원	조용만	031-330-6046, misman@mju.ac.kr	
자연	학생지원팀	팀장	이석원	031-330-6033, leesw@mju.ac.kr	주관부서 (학생)
인문	학생지원팀	팀장	윤강웅	02-300-1520, best@mju.ac.kr	

□ 위험요인

○ (폭행 행위)

-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폭력행위

※ (집단)폭행, 협박, 강요, 체포, 감금, 상해, 공갈 등

- 학교 구성원간의 폭행, 외부인에 의한 폭행 등 학교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폭력행위와 부적정한 대처로 범죄 피해자 발생 및 잠재적 범죄자 양산 초래

○ (주거 침입) 사람이 거주·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등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

※ 적법하게 주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이사에 반해 타인의 주거·관리하는 시설 침입·점거

- 학교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침입·점거,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죄발생으로 학교구성원의 안전·신변 위협 및 학습권 침해

□ 원인분석

○ 학생징계 자료 조사 결과

- 교내 폭행 행위, 절도 사례 등의 일반범죄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활동과 방법시설의 확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서대문경찰서, 용인경찰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 교내 폭행 행위, 외부인 침입 사례 등의 일반범죄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피해자 수는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예방기법의 도입과 방법 시설의 확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범죄예방)**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설계*를 시행하고, 순찰·신고 및 보고 체계 구축, 폭행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요령 및 행동 매뉴얼 수립·교육 등의 사전대책방안 마련

*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확보, 활동의 활성화 등 CEPTED 기법 적용

- **(대응조치)** 범죄피해자·목격자의 신고 시 통합경비본부, 총무인사팀, 각캠퍼스 별 학생지원팀 등 해당 지원부서 즉각 출동·조치 및 유관 기관(경찰서·소방서 등) 신고
- **(회복지원)**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존엄성 보장과 명예·사생활 보호 및 회복·지원을 위해 범죄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전개

※ 관련 매뉴얼 : [별첨13] 제4차('22~'2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법무부, 2021)

《 범죄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❶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교내 범죄

- 대학구성원의 신변안전을 위해 전문경비업체에 의한 교내 출입통제 및 범죄 예방 순찰 실시

- 대학생들과 대학행정을 위한 교육시설의 개방 및 접근통제 관리
- 범죄 예방을 위한 교내 순찰 활동
- 신변위협에 대한 행동요령 마련 및 홍보
- 음주, 흡연, 마약류 사용 등에 관한 규제와 교육 프로그램
- 사고 현장에서의 범죄 피해자 보호
- 범죄 발생 신고 접수·대응
- 범죄 발생 시 자체적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제언
- 범죄 사건 발생 데이터 수집·관리

-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설계(CEPTED) 기법 적용

- **(자연적 감시)**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
- **(접근통제)** 출입문, 담장,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법시설 등 '접근통제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
- **(영역성 확보)** 공간배치와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소유권 및 관리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
- **(활동의 활성화)** 일정한 지역에 대한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

❷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증거 기록

- 학생(또는 교직원)이 다른 학생(또는 교직원)에게 해를 주었다고 신고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이들이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조치
- 목격자(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지원 제공
- 물리적 또는 문서상의 증거를 보존·기록
- 목격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개별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 이들을 서로 분리함으로써 이들 증언의 온전성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 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⑥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주의 (노란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심각 (빨간색)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계획 비전·목표 참조

비전	범죄피해자의 인권존중 및 인간다운 삶의 보장 실현		
목표	“원상회복”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연속적 지원서비스 제공	“실질적 참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 강화와 참여기회 확대	“평온하고 안전한 삶으로 복귀” 신변 및 정보보호를 통한 2차피해와 재피해 예방
추진 정책	피해회복 지원의 내실화 및 대상 확대	- 범죄 발생 직후 응급위기 지원 강화 - 피해회복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 경제적 지원(구조금 포함)의 실질화 및 효율적 집행체계 구축	
	가해자의 책임인식 및 피해배상 촉진	- 형사조정제도의 실질화 - 가해자의 피해배상 촉진	
	형사절차 참여기반 강화 및 참여 기회 확대	- 피해자 정보접근권 확대 및 강화 - 법률조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피해자의 형사절차 진출권 강화	
	피해자의 정보 및 신변보호와 2차피해 예방	- 피해자의 정보보호 강화 - 피해자의 신변보호 강화 - 형사절차에서의 2차피해 예방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및 정책기반 강화	-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 정책기반 강화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0	2021	2022	합계	
CCTV 운영	87	87	87	261	자연
주간·야간 경비	590	640	670	1,900	자연
주간·야간 경비	504	584	769	1,857	인문
계	1,181	1,311	1,526	4,018	

② 성범죄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처벌법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인권센터	센터장	이은경	02-300-0624, eklea@mju.ac.kr	주관부서
팀원	인권센터	연구원	전지혜	031-330-6242, jhj1211@mju.ac.kr	
팀원	인권센터	연구원	송가영	02-300-1779, gayoung2763@mju.ac.kr	
팀원	인권센터	사무원	배소현	02-300-1778, sso0615@mju.ac.kr	

□ 위험요인

참고 자료 : 명지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정신적·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교육 및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다.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또는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스토킹”이라 함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인 접근, 편지, 전화, 문자, 컴퓨터통신 또는 SNS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형태의 조사행위,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정이나 화해의 중용, 권리구제의 고의적 지연이나 방해, 그 밖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 피해현황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발생건 수	성희롱	2	12	4	1	0	3.8
	성폭력	0	0	1 (2차가해)	0	0	0.2
	계	0	12	5	1	0	3.6
피해자 수	성희롱	2	12	4	1	0	3.8
	성폭력	0	0	1 (2차가해)	0	0	0.2
	계	2	12	5	1	0	4

□ 원인분석

- 사건 건수는 감소추세이나 대면 수업이 늘어나는 환경을 고려하여 학교구성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예방활동 활성화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1. 명지대학교 전 구성원대상 폭력예방교육(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인권교육)

- 교수, 직원 및 학생 대상별 집합교육
- 교수, 직원, 학부생, 대학원 대상 온라인 교육
- 교육 콘텐츠 개발(캠페인, 팸플렛, 공모전 등)

2. 인권센터 운영(성희롱, 성폭력 상담소 포함)

-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원 직무교육
- 인권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제6조(인권교육 실시) ① 인권센터는 우리 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인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변경 2022.5.1.)

제6조2(예방교육 내용)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2.5.1.)

1. 인권침해 관련 내용
2.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 기준
3. 사건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4.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5.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6. 기타 사건예방에 관한 사항

제26조(구제조치 등) ① 센터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재발방지교육 이수 및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교육 이수 및 상담
3. 피신고인의 사과
4.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및 연락금지 명령
5. 피신고인의 교내시설 및 서비스 이용 제한명령
6. 기타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누구든지 피해자,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2차 피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센터장은 사건 처리 과정 중 피해자, 신고인 또는 참고인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신변 보호를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위자나 그 소속 부서 등의 장에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치 또는 권고를 받은 피신고인이나 관계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치 또는 권고를 받은 피신고인이나 관계부서의 장은 그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2 절 조사위원회

제11조(조사위원회 설치) 센터장은 사건의 내용이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조사위원회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1. 교직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또는 법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3.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조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사 경과 및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해당 사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제13조(조사위원회 기능)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등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 및 결과 보고
2.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징계나 경고조치 등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3. 그 밖에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견 제시

제 3절 인권심의위원회

제14조(인권심의위원회 설치)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와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변경 2022.5.1.)

②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센터장, 기획조정실장, 교육지원처장, 학생처장, 사무지원처장, 학생상담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전임교원, 직원, 학생,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변경 2022.5.1.)

④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건의 조사가 종결되는 때 만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의 일부에 대하여 1년 이내의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변경 2022.5.1.)

제16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건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징계 및 재발방지 요청 등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권침해 사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한 사항

제17조(회의) ①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변경 2022.5.1.)

③상담 또는 조사에 참여한 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의 질문에 답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회의가 종료되면, 센터장은 심의결과를 회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조사와 구제절차

제18조(상담 및 신고) ①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센터에 상담신청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②해당 사건의 상담 신청 및 신고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는 별표1의 양식에 의한다.

④인권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인권센터에 이관해야 한다.

⑤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신고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⑥인권센터는 신고를 접수하는 때에 신고자에게 사건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⑦인권센터는 한번 조사해서 종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제19조(임시조치) 센터장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의결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의 즉시 중지 등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공간으로부터의 피신고인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피해자 등에 대한 일체의 연락 및 접촉 금지 등
3. 피신고인에 대한 교내 시설 및 서비스 이용제한
4. 피신고인이 교직원인 경우, 당해 교원의 수업 및 업무 배제
5. 수강과목, 지도교수 또는 근무부서 등의 변경
6.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 학습권 및 노동권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0조(조사개시 및 처리) ①센터장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피해자 등의 신고가 없더라도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③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상담 신청 및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센터장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신고사건의 조사와 해결은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와 처리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경우 센터장의 결정으로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국가심의위원회 등 법률에 따른 조사권을 갖는 기관에서 당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수사 또는 조사 중인 때에는 센터장이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해당기관의 수사나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인권센터의 조사 및 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⑨조사를 마치면 센터장은 심의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심의위원회 개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의 방법) ①조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사건 관련인은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5. 필요시 면담내용의 기록과 녹취, 녹화

②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조정 및 중재) ①센터장은 조정 및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조정 및 중재를 위하여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도록 지원한다.

③조정 및 중재가 성립된 경우 센터장은 각 당사자가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④당사자가 합의한 조정 및 중재 내용을 이행한 경우 당사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⑤당사자가 합의한 조정 및 중재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센터장은 사건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신고의 철회) ①신고인은 사건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②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하는 때에는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제24조(신고의 각하)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제18조 제5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제3자가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신고를 철회한 후 동일한 사안을 다시 신고한 경우
5.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신고 등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센터장은 신고가 각하된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구제조치 등) ①센터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재발방지교육 이수 및 상담
2. 성희롱, 성폭력 재발방지교육 이수 및 상담
3. 피신고인의 사과
4.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및 연락금지 명령
5. 피신고인의 교내시설 및 서비스 이용 제한명령
6. 기타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누구든지 피해자,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2차 피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센터장은 사건 처리 과정 중 피해자, 신고인 또는 참고인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신변 보호를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위자나 그 소속 부서 등의 장에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및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치 또는 권고를 받은 피신고인이나 관계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치 또는 권고를 받은 피신고인이나 관계부서의 장은 그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징계의 요청) ①센터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신고인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변경 2022.5.1.)

1. 조사결과 피신고인이 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22.5.1.)
2. 피신고인이 재발일 경우(신설 2022.5.1.)
3. 피신고인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신설 2022.5.1.)
4. 피신고인이 신고인, 피해자, 대리인 및 참고인 등에게 보복의 위협을 하거나 보복을 가한 경우(신설 2022.5.1.)
5.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신고인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 참고인, 신고인 등에 대한 신원노출과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끼치거나 2차 가해를 행위를 한 경우(신설 2022.5.1.)
6. 피신고인이 인권센터의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신설 2022.5.1.)

7.신고인이 사고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신설 2022.5.1.)

②(삭제 2022.5.1.)

③피신고인이 우리 대학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 사건에 대한 조사, 징계 또는 그 밖의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이의신청) ①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가 재심을 결정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재조사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제척, 기피, 회피) ①조사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조사 및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신고인은 조사 및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전 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조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각각 그 가부를 결정하되,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심의위원은 해당 심의 및 의결에서 배제된다.

④조사위원 및 심의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30조(당사자의 권리) ①피해자는 피해사실 및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와 조치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②피해자와 피신고인은 인권센터에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이나 조력자를 동반할 수 있다.

③제3자인 신고인, 피해자의 대리인 등은 피해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

④피신고인은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⑤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⑥센터장은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다른 조치, 권고, 제30조에 따른 징계요청을 한 경우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비밀유지·사건관계인 보호) ①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명·연령·직업·주소·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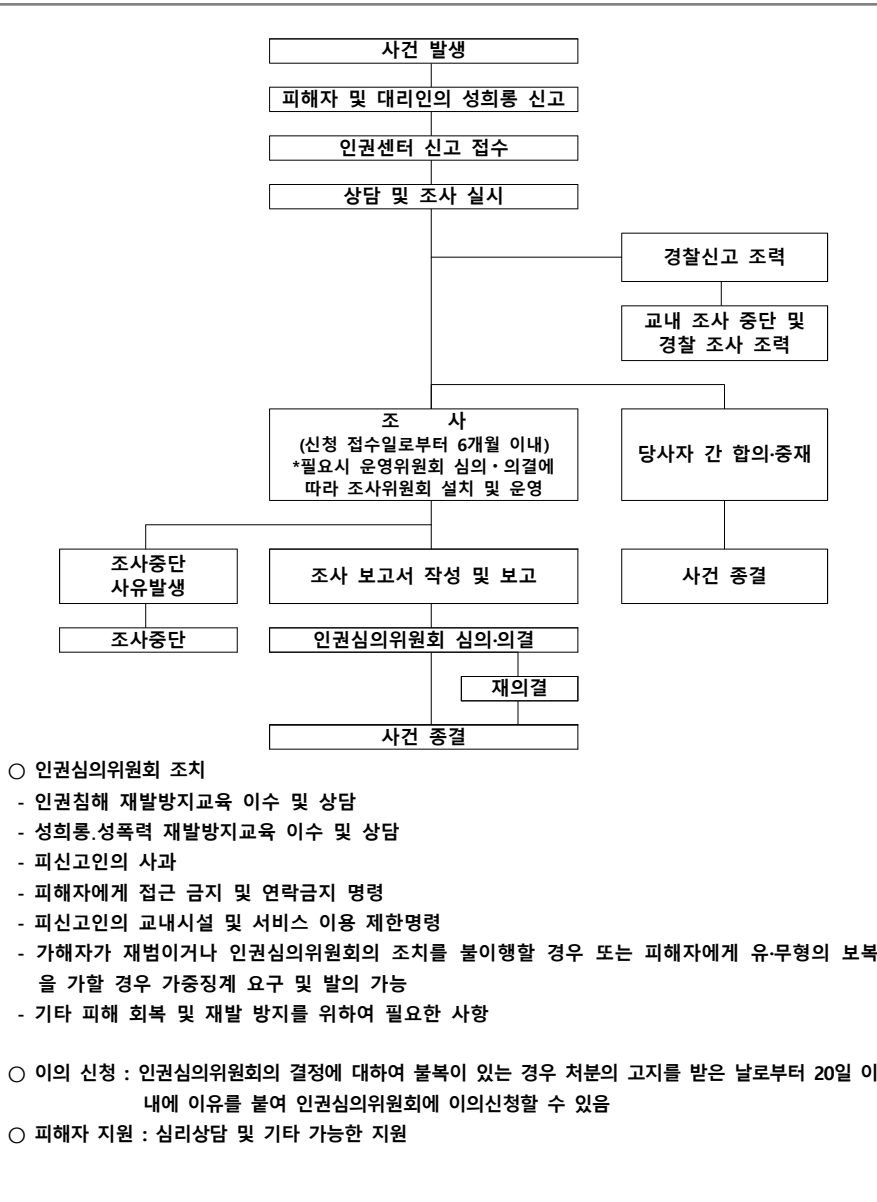
③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인권침해 등 사건 처리를 위한 조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인권침해 등 사건처리에 있어서 모든 관계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제32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인권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33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부서는 인권센터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조사 및 심의 결과 보고서

1. 기본 정보
 - 신고 접수 일자 및 담당 상담원
 - 신고인 및 피신고인 인적 사항
 - 담당 심의위원 명단
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확인
 - 사건 개요
 - 사실관계 확인 면접 개요
 - 검토 자료 목록 및 개요
3. 조사 · 심의위원회의 판단과 처리의견
 -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및 근거
 - 결론 및 처리 의견
4. 심의위원회 의결안 집행 계획
5. 기타(참고사항)

위의 조사 및 심의 결과 보고서 내용이 사실임을 동의합니다.

심의위원장	(인)
심의위원	(인)
	(인)
	(인)
	(인)
	(인)
담당상담원	(인)



명지대학교 인권센터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0	2021	2022	합계	
인권센터(교비)	8	8	15	31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국비)	2	3	3	8	
교육연구 프로그램개발운영비 (국비)	5	5	5	15	
계	15	16	23	54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3조, 제15조~19조,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4조

※ (관련 기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현업업무 종사자 업무내용 규정

☞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보조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직 책	담당 부서	성 명	연락처	비고
자연	팀장	시설관리팀	이유신	031-330-6902 lys1016@mju.ac.kr	
	팀원	시설관리팀	김준경	031-330-6904, kimjk4224@mju.ac.kr	
인문	팀장	총무시설팀	전용우	02-300-1550, dr1224@mju.ac.kr	
	팀원	총무시설팀	한경자	02-300-1555, hankj@mju.ac.kr	

□ 위험요인

-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주요사유) 안전(예방)대책 미비·부실, 근로자 피로, 작업상 부주의·실수, 숙련 미달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과 노동생산성 저하 및 효율성 저해

□ 피해현황(없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안전조치) 위험기계·위험물질 사용 시, 조작·운반 등 위험한 작업 시, 추락·붕괴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조치 이행
- (보건조치) 분진·흙·병원체, 고온·저온·소음과 적정기준 미준수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발생과 단순 반복작업 등의 인체 부담작업 시 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조치이행

« 산업재해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21년도 산업재해 통계분석 등을 바탕으로 기관별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반영한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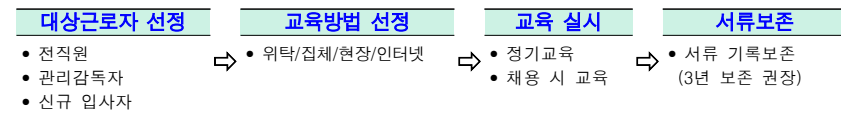
- '22년도에는 구성된 체계에서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선임하여 안전·보건업무 수행
- ※ (의무대상)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경비 및 통학보조, 조리시설 등 현업업무 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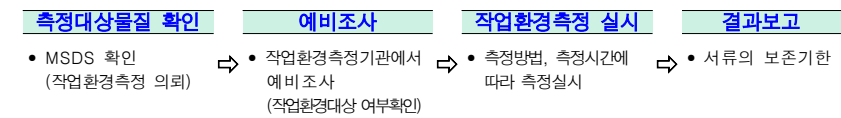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은 작업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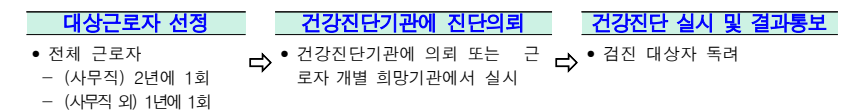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에 근로자의 노출 수준을 평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직업병 발생 예방



○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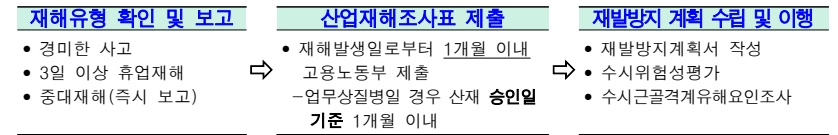
-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수준을 파악,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 적절한 작업배치와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사후관리
- 집단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나 건강장해 요인을 가진 근로자의 발견과 적절한 조치



○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은폐해서는 안 되며, 재해를 통해 향후 동종재해가 재발

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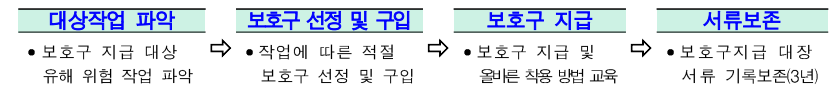


○ 산업재해 통계기록 및 유지·관리

- 산업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국립대학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방향 설정
- 교육부의 산업재해 통계 보고 양식에 따라, 교육기관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매년(연초) 관리

○ 안전시설 및 보호구

- 보호구 착용은 작업환경 또는 작업수행 시 발생하는 유해·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
- 노출된 유해·위험의 종류를 알고 그에 적절한 보호구를 선정하여 지급하고 필요시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



○ 유해·위험 방지 활동

- 위험성 평가

- 산업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 시 실시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한 조사
-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시 실시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대거나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한 사고현장 보존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 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㉔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 관련 매뉴얼 : [별첨16] 산업재해 예방 관련 주요사항 안내(교육부, 2022)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주체	사업주 : 사업장 단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위자로 처벌
보호대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처벌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그외) 안전보건조치 미준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재해정의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의무 이행사항	1.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및 유지·관리 8. 안전시설 및 보호구 구입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중대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제4조, 제6조, 제9조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직 책	담당 부서	성 명	연락처	비고
자연	팀장	시설관리팀	이유신	031-330-6902 lys1016@mju.ac.kr	
	팀원	시설관리팀	김준경	031-330-6904, kimjk4224@mju.ac.kr	
인문	팀장	총무시설팀	전용우	02-300-1550, dr1224@mju.ac.kr	
	팀원	총무시설팀	한경자	02-300-1555@mju.ac.kr	

□ 위험요인

-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통칭하나, 공공이용시설(교육기관)은 중대시민재해 범위에서 제외되어 교육기관은 ‘중대산업재해’만 해당
-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중대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노출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위험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체계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으로 학교 중대재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자율적으로 유해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안전체계 구축
- **(환경조성)**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재해 없는 근로환경 조성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조치, 재해발생 시 재해재발 방지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교육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

❶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시행령 제4조제1호)

- 산업재해가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해 핵심적인 목표 및 경영방침 마련

- 안전보건 법규 등 관련 규정 준수, 안전한 근무환경 구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시스템 구축·운영
-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적극 발굴·제거 등 재해예방과 개선 활동 지속적 실시
- 모든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안전문화 조성 지원
-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결정 시 소통을 통한 근로자의 참여 보장 등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여부 점검(시행령 제4조제3호)

- 재해예방의 핵심과제로 사업장별(특수학교, 소속기관, 본부 순)·직종별(급식, 청소, 시설 등) 유해성을 평가하고 유해요인 발견 즉시 개선
-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정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여부 점검(분기별 1회)

○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추진(시행령 제4조제4호)

- 위험성 평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위험요소 개선, 안전보건 교육 등은 필수적으로 예산 확보 및 집행
- ※ (주요항목)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시행령 제4조제5호)

-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예산에 대한 자율권 확대 추진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해당 업무 수행 여부를 평가기준(붙임1)에 따라 상·하 반기 각 1회 자체 평가 실시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제7호)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반기별 1회 이상)
- 게시판 내 안전보건 건의함을 신설,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상시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을 듣고, 재해예방이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

의견수렴	노사 간담회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 협의)	개선조치
• 현장방문 의견 청취 • 의견청취함(WIKI 게시판) • 안전보건교육	⇒ • 요청된 의견에 대한 재해예방 반영여부 검토	⇒ • 안전조치
• 쓰레기 분리수거 봉투가 너무 커서(100L) 근골격계에 부담	• 노사 간담회(또는 안전관련 회의)에서 반영 여부 검토	• 기관내 분리배출 봉투를 50L로 교체

○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준수(시행령 제4조제8호)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매뉴얼*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급박한 위험에 대비
- * 청소·환경미화, 시설관리, 경비, 통학보조 등 직종별 산업안전보건 매뉴얼(교육부, '22.)

재해유형 확인 및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 경미한 사고 • 3일 이상 휴업재해 • 중대재해(즉시 보고)	⇒ •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제출 - 업무상질병일 경우 산재 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	⇒ •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 수시위험성평가 • 수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조치(시행령 제4조제9호)

-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점검(반기 1회 이상)
- 국가·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 등 법령상의 계약절차 등을 따르고 있어 기관 임의의 기준·절차 마련에 한계가 있으나, 산재예방 관련 능력을 평가를 고려하여 업체 선정

- (경쟁입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 위반으로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의 입찰 제한 등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안전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입찰 추진
-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시에도 업무수행 능력뿐 아니라, 산재예방 조치 능력 고려

○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담당부서 지정(시행령 제4조제2호)

- 업무의 중요도·계속성을 감안, 중대재해 업무담당 전담인력(2인 이상)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조직 설치 추진
- ※ 안전관리자 등 전문가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의무적으로 설치
- 전담조직의 중대재해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이므로 두 업무는 구분 운영 추진

㉔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다거나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한 사고현장 보존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 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㉕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수형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6. 기타

1 비상사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9조2, 제13조의5 등

통합방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7조, 제13조의5 등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22. 7. 5. 시행 예정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급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인문비상계획팀	4급	봉하민	02-300-1901, hahmin@mju.ac.kr	주관부서
팀장	자연비상계획팀	5급	이규연	031-330-6640, gygyil@mju.ac.kr	
팀장	총무시설팀	5급	전용우	02-300-1550, dr1224@mju.ac.kr	협조부서
팀장	총무인사팀	3급	홍성규	031-330-6010, hsg7134@mju.ac.kr	

□ 위험요인

- **(비상사태)** 전시·사변(국가적 난리·변고) 및 이에 준하는 사태 등이 발생하여 국가·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차원의 긴급 상황
 - 공습·포격, 핵·방사능 피폭, 생물·화학무기 피해 등 적 공격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국가의 주요 시설 파손 및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 대비방안

- 전시, 사변, 폭동 등 국가차원의 비상사태는 발생된 사례가 없으나, 관련 법령 및 총무계획 등에 따른 평시·전시 계획수립 및 교육·훈련 실시 필요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	경영책임자 :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보호대상	중사자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처벌대상	경영책임자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그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재해정의	(중대산업재해) 산안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공공이용시설·교육기관 제외
의무 이행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1.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총괄 관리 전담 조직 설치 ※ 컨트롤타워 역할: 총괄관리의 의미로 안전·보건업무 직접수행의 의미는 아님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조치 4. 인력, 시설, 장비 구비 및 개선 예산편성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 전문인력 배치(안전·보건관리자 등) 7. 중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점검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9. 제3자의 도급, 용역, 위탁의 안전관리를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 반기 1회 이상 점검, 결과보고 2. 인력, 예산 지원 3.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확인

□ 대응 대책

- **(계획수립)** 비상시(전시) 행동요령, 비상대비물자 준비·사용요령, 부상자 응급조치, 인명·시설 피해복구 등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충무실시계획 등 수립
 - 매년 명지대학교 충무(교육)실시계획 수립후 교육부 승인을 득함
 - 민방공 대피계획 수립,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지자체 협조)
- **(비상조직)** 전시·비상 시 대응을 위해 비상조직체계 구축을 통해 부서·개인별 임무·역할의 명확한 규정·부여 및 신속·정확한 의사결정과 상황통제·관리
- **(교육·훈련)**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필수·핵심요원 등에 대한 주기적인 비상대비 교육과 국가 재난대비훈련·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하여 사태·상황별 정기적인 훈련 실시

III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1. 대학보험(공제) 가입 총괄현황

구분	대인(학교구성원)	대물(교육시설)
자연캠퍼스	업그레이드대 학종합보험	업그레이드대 학종합보험
인문캠퍼스	업그레이드대 학종합보험	업그레이드대 학종합보험

2. 대학배상책임보험(공제)

III 민법 & 학교안전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학교안전법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 (관련 규정) 보험업 감독규정

☞ **제1-2조의2(보험계약 및 보험종목의 구분기준)** 영 제1조의2제5항에서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 및 영 제8조제2항에서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이란 별표1에 따른 구분기준을 말한다.

□ 보상한도(자연, 인문캠퍼스 동일함)

*학생 대상

담보대상	보상구분	보상한도액(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배상책임 (학교경영자배상책임 담보 등)	대인	100,000	30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대물	-	10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교내·외 (교내·외 치료비 담보 등)	치료비	5,000	5,000	
	사망,후유장해	-	-	
신입생(OT)등 (신입생 학교행사 중 담보 등)	치료비	5,000	5,000	
	사망,후유장해	10,000	10,000	

*교직원 대상

1. 보 험 명 : 2021 단체상해보험 (2021.5월 ~ 2022년 4월)
2. 보 험 사 : 현대해상화재보험, 한국교직원공제회
3. 대 상 : 전임 교직원(계약직원 포함) 및 배우자(신청한 자에 한함)
4. 부 담 금 : 학교부담(본인부담 없음)
5. 보상한도 : 세부내용 첨부 참조

구 분		지 급 사 유	보장금액
상해사망		상해사고로 사망시	1억원
상해후유장해		상해사고로 3~100% 후유장해시	1억원
질병사망, 일반사망		질병으로 사망시	3천만원
질병후유장해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3천만원
암진단비		최초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갑상선암 2백, 경계성종양 2백, 기타피부암 1백)	1천만원 (각 최초 1회限)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최초 급성심근경색 또는 뇌출혈 진단확정시	1천만원 (각 최초 1회限)
선택(*)	입원의료비 및 비급여의 료실비	질병 또는 재해, 분만 등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한방, 치과 포함 / 성형, 라식, 보철 등은 제외) (본인부담금의 90%(급여) ~ 80%(비급여) 상급병실료 : 차액의 50%, 1일평균 10만원 한도 도수치료/주사제/MRI및MRA(통원 포함)	1천만원 350/250/300만원
	입원일당	실손의료비 개인가입자(첫날부터 최대 180일) 분만(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제외	

6. 입원의료비 세부내역

항 목	보상내역
본인부담금	80% ~ 90% 보상
병실료	기본병실료와 상급병실료의 차액 50% 보상 주1. 1일 10만원까지만 인정
치질등 항문질환	발생비용중 급여부분만 보상
요실금 질환	보상 제외

3. 교육시설안전보험(공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관련 기준) 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공제 공제급여 기준

[공제급여 대상] 화재(벼락 포함) · 폭발 · 붕괴·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풍랑 · 해일 · 대설·한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한 공제가입 목적물의 손해 또는 제3자의 법률상 배상책임(대인·대물) 등

□ 가입현황 [자연캠퍼스]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대상 건물	건물 면적 (㎡)	일반건물 재난담보	시설물 소유자 배상책임	부속물	물품 공제회비	합 계	비고
2021	교육연구 시설공제	2021-01-01 2021-12-31	41	195,403	25,402	1,495	1,044	18,036	45,977	
2022	교육연구 시설공제	2022-01-01 2022-12-31	41	195,403	25,402	1,495	1,068	18,401	46,366	

□ 보상한도 [자연캠퍼스, 2022년도 기준]

구분		건물수/ 물품수	가입면적(㎡)	가입금액(천원)	공제회비(천원)	비고
일반건물		41건물	195,403	303,300,820	25,402	
고가건물		0건물	0	0	0	
시설물 소유자 배상책임	대인	41건물	195,403	인당:300,000 사고당:300,000	1,495	
	대물			사고당:1,000,000		
부속물(공작물)		6건	-	7,121,134	1,068	
물품		8,908건	-	55,259,934	18,401	
합계					46,368	

□ 가입현황 [인문캠퍼스]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대상 건물	건물 면적 (㎡)	일반건물 재난담보	시설물 소유자 배상책임	부속물	물품 공제회비	합 계	비고
2021	교육연구 시설공제	2021-01-01 2021-12-31	9	98,444	12,780	754	167	5,088	18,789	
2021	교육연구 시설공제	2021-09-06 2021-12-31	1	30,669	1,435	85	0	40	1,560	
2022	교육연구 시설공제	2022-01-01 2022-12-31	10	129,113	16,785	988	167	6,114	24,054	

□ 보상한도 [인문캠퍼스, 2022년도 기준]

구분	건물수/ 물품수	가입면적(㎡)	가입금액(천원)	공제회비(천원)	비고
일반건물	10건물	129,113	184,889,816	16,785	
고가건물	0건물	0	0	0	
시설물 소유자 배상책임	대인 대물	10건물	인당:300,000 사고당:300,000 사고당:1,000,000	988	
부속물(공작물)	8건	-	1,110,415	167	
물품	2402건	-	20,516,482	5,088	
특별담보 (대학물품 위험확대)	2건	스프링클러 및 급배수설비 누출		1,026	
합계				24,054	

4. 연구실안전보험(공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 준 연 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 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1	연구실안전 공제	2020-05-01 2021-04-30	2.7	5,406	14,803	-	-	-	-	
2022	연구실안전 공제	2021-05-01 2022-04-30	3.9	5,331	20,577	-	-	-	-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천원)	비고
유족급여	200,000	
장해급여	200,000	
요양급여	2,000,000	
입원급여	50	
수업료 손실 지원금	1,000	정규학기 미수로, 손실액 발생 시 또는 15일 이상 연속 입원 시
기숙사비 손실 지원금	300	전여학기 사용불능, 손실액 발생 시 또는 15일 이상 연속 입원 시

IV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1. 재난안전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직책	담당부서	성명	연락처	비고
자연	팀장	시설관리팀	이유신	031-330-6902 lys1016@mju.ac.kr	
	팀원	시설관리팀	김성태	031-330-6904, kimjk4224@mju.ac.kr	
인문	팀장	총무시설팀	전용우	02-300-1550, dr1224@mju.ac.kr	
	팀원	총무시설팀	한경자	02-300-1555, hankj@mju.ac.kr	

□ 2021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자연	(생활관)학생	2021. 4. 7. ~ 2021. 4.14.	2	253	0
	교직원	2021. 7.28.	1	21	0
		2021.12.17. ~ 2021.12.31.	2	382	0
인문	(생활관)학생	2021. 4. 7. ~ 2021. 4.14.	2	175	0
	교직원	2021.12.17	1	68	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대학 소방안전훈련	- 소방안전 기본 내용(소화, 통보, 피난, 응급처치 등) - 겨울철 화재 및 전기화재 예방

□ 2022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자연	(생활관)학생	2022. 4. 7. ~ 2022. 4.20.	2	918	0
		하반기 중 시행	2	미정	0
	교직원	2022. 4. 7. ~ 2022. 4.20.	2	350	0
		하반기 중 시행	2	미정	0
인문	(생활관)학생	2021. 4. 7. ~ 2021. 4.14.	2	609	0
		하반기 중 시행	2	미정	0
	교직원	2022. 4. 7. ~ 2022. 4.20.	2	331	0
		하반기 중 시행	2	미정	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대학 소방안전훈련	- 소방안전 기본 내용(소화, 통보, 피난, 응급처치 등) - 겨울철 화재 및 전기화재 예방

2. 비상대비 교육·훈련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4(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의5에 따라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인문비상계획팀	4급	봉하민	02-300-1901, hahmin@mju.ac.kr	주관부서
팀장	자연비상계획팀	5급	이규연	031-330-6640, gygyi@mju.ac.kr	
팀장	총무시설팀	5급	전용우	02-300-1550, dr1224@mju.ac.kr	협조부서
팀장	총무인사팀	3급	홍성규	031-330-6010, hsg7134@mju.ac.kr	

□ 2021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훈련기간	훈련대상	비고
민방위(민방공)훈련	2021.4.19.(월)~6.30.(수)	교직원	사이버교육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민방위(민방공)훈련	▪ 유사시 대피 및 대처 요령 교육 및 훈련

□ 2022년 교육·훈련 계획

예시 시식

○ 추진개요

구분	훈련기간	훈련대상	비고
민방위(민방공)훈련	2022.4.11.(월)~6.30.(목)	교직원	사이버교육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민방위(민방공)훈련	▪ 유사시 대피 및 대처 요령 교육 및 훈련

3. 연구실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과 방법, 교육·훈련 담당자의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원	시설관리팀	팀원	김준경	031-330-6904, kimjk4224@mju.ac.kr	주관부서, 겸임
팀원	시설관리팀	팀원	정용찬	031-330-6900, ycjeong0003@mju.ac.kr	주관부서, 겸임
팀원	시설관리팀	팀원	김성태	031-330-6864, tjdxo0229@mju.ac.kr	주관부서, 전담

□ 2021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대상자	수료자(수료율)
신규교육훈련	신입생/신규임용종사자	2	1,378명	955명 (69%)
정기교육훈련	연구활동종사자 전원	2	10,337명	6,589명 (64%)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규교육훈련	신입생, 신규임용종사자 대상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교육
정기교육훈련	연구활동종사자(교원/연구원/대학원생/학부생) 대상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교육

□ 2022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신규교육훈련	신입생/신규상시종사자	2	약 1,500명	해당없음
정기교육훈련	학부생/상시종사자	2	약 10,000명	해당없음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규교육훈련	신입생, 신규임용종사자 대상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교육
정기교육훈련	연구활동종사자(교원/연구원/대학원생/학부생) 대상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교육